#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41 발의연월일: 2024. 12. 27.

발 의 자: 민형배·김동아·정동영

이개호 • 양문석 • 이강일

이정문 • 이용선 • 윤준병

김태선 • 이수진 • 박지원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되면, 헌법상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 직무가 정지됨으로 대통령 보수도 의결 즉시, 정지하고자 합니다.

우리 헌법 제65조는 "공무원 직무집행시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때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"고 규정합니다. 이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대통령 권한행사는 정지됩니다.

2024년 12월 14일,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이나 여타 집무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국군통수권, 조약체결 비준권, 헌법 개정안 발의·공포권, 행정입법권, 공무원 임면권 등 헌법상 권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국무회의 주재, 부

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일상적 국정 운영도 불가능합니다.

이렇게 직무는 정지됐는데, 탄핵 의결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정지 규정이 부재하여 보수가 지급됩니다. 반면, 일반 공무원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정직 처분시 그 기간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합니다.

이에, 대통령도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그 기간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.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된 모든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당연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49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2(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) ①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한다. 다만, 감액된 보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소급하여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권한 행사가 정지된 자가 대통령일 경우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된 모든 자에게 제1항을 적용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수 감액에 관한 적용례)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49조의2(권한행사가 정지된 공
	무원의 보수) ① 탄핵소추의
	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
	된 자는 그 기간동안 보수 전
	액을 감한다. 다만, 감액된 보
	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
	서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소
	급하여 지급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권한 행사가
	정지된 자가 대통령일 경우 대
	통령비서실에 소속된 모든 자
	에게 제1항을 적용한다.